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와 ‘사목 평의회’를 통한 시노달리타스 실현

엄재중·이규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들어가는 말

1. 보편교회와 사도좌 문헌에서 말하는 사목 평의회
 - 1.1. 사목 평의회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 1.2. 공의회 이후 문헌들에서 말하는 사목 평의회
2. 한국 천주교회와 ‘사목 평의회’
 -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사목 평의회와 관련한 한국 교회의 노력
 - 2.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와 사목 평의회
 - 2.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2.4. 서울대교구인천 교구 시노드와 사목 평의회
3. 시노드 기관으로서 사목 평의회의 장애 요인과 쇄신 방향
 - 3.1. 사목 평의회 활성화의 장애 요인
 - 3.2. 사목 평의회의 쇄신 방향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현재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2023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의 진행과 후속 결과에 집중해 있다.¹⁾ 2023년 6월 21일 교황청 주교시노드 사무처가 발표한 제1회기를 위한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²⁾은 2021년 10월부터 전 세계 지역 교회와 대륙별 총회에서 진행된 시노드 과정의 결실이고, 각 개별 교회는 다시 지역 교회의 특수성 안에서 「의안집」이 제시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교시노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상호 소통이야말로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as)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 곧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한 일원으로 자신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역시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 아래서 「의안집」의 질문들에 응답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의안집, 5-6.12.25항 참조).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면,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³⁾에서 명시한 것처럼 교구의 사목 평의회(Consilium pastoral e)⁴⁾를 실질화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 안에서의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은 소통의 필요성과,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교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방향 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사목 평의회의 설치와 실질화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의 많은 교구들에서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해

1) 본 논문은 최초의 논문 제출 시점인 2023년 10월 초 현재로 작성되었고,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해당 주교시노드의 진행과 후속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2) 주교시노드 사무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본문에서는 ‘의안집’으로 약칭).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30370?page=3&gb=K1200>(검색일: 2023.10.2.)

3) 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본문에서는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로 약칭), 2022년. <https://cbck.or.kr/Documents/Other/20221041?category=K5170&gb=title&search=%EC%84%B8%EA%B3%84%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20%EC%A0%9C16%EC%B0%A8%20%EC%A0%95%EA%B8%B0%EC%B4%9D%ED%9A%8C%20%ED%95%9C%EA%B5%AD%20%EA%B5%90%ED%9A%8C%20%EC%A2%85%ED%95%A9%20%EC%9D%98%EA%B2%AC%EC%84%9C>(검색일: 2023.10.2.)

4)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사목 평의회, 특히 본당 사목 평의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목회’, ‘사목협의회’, ‘사목위원회’, ‘사목 평의회’ 등을 혼용하여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여러 문헌들에서 혼용된 이 단어를 ‘사목 평의회’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최근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문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개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임 기구”⁶⁾로 교구 사목 평의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에서는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와 같은 시노드 기구[참여 조직들]이 효과적인 공동체적 식별 기관으로 변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들이 사명을 효과적이고 창조적이며 활기 있게 지원하려면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지, 그러한 조직들에 어떻게 공동체 삶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또 기여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⁷⁾ 지역 교회의 다양한 정청과 대화 모임, 그리고 대륙별 회의의 식별 과정에서 나타난 사목 평의회의 쇄신에 대한 요청은 단지 「의안집」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세례성사에서 유래하는 공동 책임성의 실천에 대한 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목 평의회는 단지 교구와 본당의 규정집에만 존재하거나 목자 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두지 말고 실제로 수행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목 평의회를 비롯한 개별 교회의 참여 기구들에서부터 참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곧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의 「의안집」이 제시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목 평의회에 대한 보편 교회의 가르침과 한국 교회의 실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먼저, 처음 사목 평의회 설치를 요청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 사도좌 문헌들이 가르치는 사목 평의회의 설립 목적과 구성원의 자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사목 평의회에 대한 보편 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 이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보편 교회의 입장과 결부되어 사목 평의회에 대한 규정과 실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다. 특별히,

5)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교구 단계가 마무리되고 교구들에서는 사목 평의회를 통해 시노드 정신을 이어가고자 사목 평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화 조치를 취했다. 서울대교구와 부산교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76021(검색일: 2023.5.22.);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81863(검색일: 2023.5.22.)

6)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2, 81항.

7)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제2부 3.3 참조.

8) 참조: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2018.9.15., 7항. 출처: <https://cbck.or.kr/Notice/13013832?page=53>(검색일: 2023.5.15.)

한국 교회 최초의 전국적인 시노달리타스 사건으로 평가받는 200주년 사목회의의 추진 과정과 의안 등을 검토하는 데 많이 할애하겠다. 이런 작업들을 마친 뒤에 앞서 제시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사목 평의회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와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보편 교회와 사도좌 문헌에서 말하는 사목 평의회

1.1. 사목 평의회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사목 평의회에 대해서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은 주교 교령과 선교 교령, 그리고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이다. 먼저 주교 교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목 평의회 설치를 언급하고 있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주교 교령, 27항) (26항)

여기서 공의회가 사목 평의회 설치를 “매우 바람직하다”(valde optantum est)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단순히 권고 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의회 논의 과정과 최종 결정에 따르면 주교 역시 평신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평신도는 그 신분상 교회 사도직(Ecclesiae apostolatu)에 참여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의회가 사목 평의회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⁹⁾ 그리고 평신도를 포함하는 하느님 백성은 교구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사목 활동, 곧 사명 수행을 위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천적 결론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 교령에서도 선교 활동을 수행하며 그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려면 모든 선교 일꾼

9) 참조: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 광주가톨릭대학교, 25-26.

들이 한미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선교 교령, 30항)라고 하였다. 교회의 근본적 사명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도 하느님 백성의 세 신원이 함께하는 사목 평의회 설치가 필요하다. 것이다.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에서는 사제 평의회 설치를 요청하는 구절(7항)의 각 주 41에서 ‘사목 평의회’를 거론하고 있다. 교령에 따르면, 사제 평의회는 “주교 교령 27항에서 말하는 ‘사목 평의회’와 다르다. 평신도들도 포함하는 사목 평의회는 오로지 사목 활동에 관련된 연구를 그 소임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애들러 사목 평의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평신도 교령에서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도적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협의체’를 교구만이 아니라 본당과 교구를 넘어서는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각 교구에는 되도록, 복음화와 성화 활동,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들의 상호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26항).

이밖에 사제와 평신도의 협력의 관점에서 사제 생활 교령에서는 사제들은 평신도의 품위와 교회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했고(9항), 교회 현장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선익과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다(37항).

1.2. 공의회 이후 문헌들에서 말하는 사목 평의회

1.2.1.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8.6.)¹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공의회에서 발표된 ‘주교 교령’, ‘사제 생활 교령’, ‘수도

10)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8.6.). 출처: 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motu_proprio/documents/hf_p-vi_motu-proprio_19660806_ecclesiae-sanctae.html(검색일: 2023.6.23.)

생활 교령’, ‘선교 교령’의 이행에 관한 바오로 6세 교황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사목 평의회와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의 교서는 16항에서 주교 교령이 권고하는 사목 평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이행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사목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을 검토, 심의하여 실질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활동이 복음에 더욱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목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가지며, 여러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목 평의회는 본질상 상임 기구이지만, 구성원과 활동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권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나 사목 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셋째, 사목 평의회는 교구장 주교가 특별히 선발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로 구성된다.

넷째, 사목 평의회는 목적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일하는 기관이나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미리 연구한 다음,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같은 지역에 다른 예법의 교계가 존재할 경우, 되도록 사목 평의회가 여러 예법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어 예법 간의 특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여섯째, 다른 사항은 17항을 합당하게 존중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긴다.

1.2.2. 세계주교시노드 제2차 정기총회 문서 「직무사제직」(1971.11.30.)¹¹⁾

1971년 개최된 세계주교시노드 제2차 정기총회는 ‘세계 정의’와 ‘직무 사제직’을 주제로 해서 개최되었다. ‘직무 사제직’에 대한 문서에서는 사제들과 주교의 관계, 사제들 간의 관계와 함께 사제들과 평신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문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9항을 인용하

11)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전임 사제직에 관하여-제2차 세계 주교시노드 문헌”, 김남수 역, 『사목』, 제 25호(1973), 130.

면서 사제들은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신뢰로써 평신도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행동의 자유와 여지를 남겨 주며,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있는 대로 격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신자들은 “사제들이 더 쉽게 어려움을 이겨 내고 더욱 효과적으로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사목 평의회(주교 교령 27항)는 교구 공동체가 사목 활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연구하고 숙고하여 필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사제 평의회를 통해 주교들과 사제들 사이의 협력이 강조되는 것처럼 속히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2.3. 교황청 성직자성성의 ‘사목 평의회’에 대한 회람 「모든 그리스도인」 (OMNES CHRISTIFIDELES, 1973.1.25.)¹²⁾

1973년 교황청 성직자성성이 사목 평의회에 대해 발표한 회람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구 차원의 사목 평의회가 본당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 문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목 평의회는 교구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실제로 있어서 교구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요청과 경험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로 구성하고 그들의 지역적 사회적 직업적 조건과 교회 안에서 역할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사목 평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교구장이 결정하지만 회원의 과반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 사목 평의회는 그 성격상 상설 기관이지만 회원 각자와 활동은 기한이 있고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책상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경우 외에 다른 회원은 임기제로 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7항).

사목 평의회는 주교의 자문 기관이지만 이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은 주교도 존중할 것이다(8항).

사목 평의회회의 임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 교령이 가르치는 대로 사도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 하느님 백성의 삶과 활동에 대한 복음과의 일치성을 촉진하기 위해 실천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가 지적하

12) SACRA CONGREGAZIONE PER IL CLERO, LETTERA CIRCOLARE CIRCA I CONSIGLI PASTORAL OMNES CHRISTIFIDELES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lergy/documents/rc_con_cclergy_doc_19730125_omnes-christifideles_it.html(검색일: 2023.6.23.)

거나 평의회 구성원들이 제안하고 교구장이 받아들이는 문제들은 교구 안에서의 사목적 돌봄 행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그 연구로 맡길 수 있다. 그러나 평의회는 보편 교회의 신앙, 윤리 원칙 또는 교회법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선언할 권한이 없다(9항).

교구장 주교는 사도직의 필요에 따라 사목 평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자신이 평의회를 주재한다. 사목 평의회는 연구와 실제적인 결론은 그 성격상 주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제안이므로, 주교는 자신의 재량과 권한에 근거하여 사목 평의회가 작성한 문서를 법의 규범에 따라 수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배포할 수 있다(10항).

주교좌가 공석이 될 경우, 사목 평의회는 소멸된다(11항).

교구 내에 분당, 지역, 사회 범주 단위의 유사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관구, 전국, 국제적 수준에서 평의회는 현 단계에서 부적당하다(12항).

1.2.4. 교황청 주교성의 주교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교회의 모상」 (ecclesiae imago, 1973.5.31.)

이 문헌은 204항에서 앞의 문헌들을 요약하면서 교구 사목 평의회와 분당 사목 평의회 연결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¹³⁾

“사목 평의회는 교구 사목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며, 하느님 백성이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복음에 더욱 밀접하게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평의회는 연구와 숙고를 통해 교구 공동체가 사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판단을 내린다.”

“사목 평의회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된다. 이 평의회는 성직자(따라서 부제도 포함),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며, 주교가 특별히 선출한다.”

“평의회는 자문 권한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주교는 그 권고를 크게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 권고는 자신의 사도직에 교회 공동체의 진지하고 확고한 협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3) *Diocesan/Eparchial Pastoral Councils: Historical Development, Canon Law,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By The Very Reverend John A. Renken(2002)에서 재인용. https://www.usccb.org/about/laity-marriage-family-life-and-youth/laity/upload/Historical-Development-Canon-Law-and-Practical-Considerations_09-25-2017.pdf(검색일: 2023.10.22.)

“평의회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교는 신자들의 선익이 요구할 경우 모든 본당에서 사도직의 다른 직무들 가운데 본당 사목 평의회를 설립하고 이것이 교구 평의회와 연계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평의회들은 교구 공동체 전체가 교구 평의회를 통해 주교에게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구 평의회에서 봉사할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다.”

1.2.5. 교회법전(1983년)

위의 문헌들과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직후부터 사목 평의회를 교회법전에 규정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 작업은 앞에서 계속해서 원천으로 삼았던 주교 교령 27항과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1장 16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목 평의회에 대해 교회법전은 크게 세 부분. 곧 사목 평의회 목적과 구성원 임명,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것이었다.¹⁴⁾ 이에 따라 교구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 511조-514조)와 본당 사목 평의회(제536조-537조)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다.

이에 따르면, 교구 사목 평의회는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또 그 구성원들은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며,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직업적 조건들, 그리고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하고, 확고한 신앙과 덕망과 신중이 뛰어난 신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사목 평의회 임기는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로 구성되고, 교구장이 공석이 되면 사목 평의회 역시 종료된다. 사목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가지며 사목 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평의회에 다룬 내용을 법으로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그리고 사목 평의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 평의회에 대해서는 교구 사목 평의회만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 의견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본당 사목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있고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제536조). 교회법전은 본당 사목 평의회에 대해서는 사제 평의회 의견 듣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본당 재무 평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전제도 없이

14) 참조: 김진화, “교구 사목 평의회 법제화 과정”, 『신학전망』, 136호(2002), 광주가톨릭대학교, 65.

본당에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7조).

1.2.6.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2018년)

이 문서는 시노달리타스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을 더 깊고 더 넓게 신학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시노달리타스 실천의 첫 단계는 개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교구 사목 평의회는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임 기구로 제시된다. 곧 교구 사목 평의회는 “주교와 그의 사제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목 전체에 자격을 갖춘 유능한 기여를 하는 역할을 지니며, 때에 따라서는 주교의 특별한 권위 아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 본성과 회합의 주기, 그리고 그 절차 및 임무의 목표 때문에”¹⁵⁾ 교구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구이다. 문서는 본당 차원에서는 시노달리타스 특성을 지닌 두 가지 구조로 본당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를 들고 있다. 여기서 문서는 현재 교회법이 본당 사목 평의회를 단지 제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개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역동성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교구 사목 평의회가 본당 사목 평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⁶⁾

1.2.7.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2020년)

이 문서에서는 본당 재무 평의회(101항-107항)와 함께 사목 평의회(108항-114항)를 길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훈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당 사목 평의회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본당 사목 평의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사목 평의회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설립과 일치한다.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은총에서 생겨난다. 모든 신자는 세례를 통해 받은 보편 사제직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고 동시에 하느님 백성 전체는 지체들의 공동 책임을 통해 교회의 사명(역사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징 식별, 하느님 나라의 증인 됨)에

1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81항.

16) 참조: 위의 책, 84항.

참여한다. 따라서 사목 평의회는 하느님 백성이 복음화 사명의 주체요 적극적인 주역이며 그 중심임을 실현하는 기구이다.¹⁷⁾

이러한 전망에서 본당 사목 평의회는 바오로 6세의 말씀에 따라 “사목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을 검토 심의하여 실질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활동이 복음에 더욱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¹⁸⁾이다. 그리고 사목 평의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대로 “교회의 조직화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가가려는 선교 열망”¹⁹⁾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훈령은 여기서 사목 평의회가, 구성 기준, 위원 선출 방식, 기능의 목적과 방식에서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을 따르는 협의체로서 그저 하나의 본당 ‘단체’로 사목 평의회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사목 평의회로서 성격을 변질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²⁰⁾ 이렇게 사목 평의회는 교구 규범을 준수하여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며,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사제, 수도자, 평신도)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자들이 본당 공동체의 선익과 관련하여 자기의 견해를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표명하고, 또한 이것을 그 밖의 신자들에게 알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본당 사목 평의회는 주요 임무는, 교구의 사목 여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본당 사목 계획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데에 있다.²¹⁾

여기서 훈령은 교회법 제536조 2항에 따라 사목 평의회에 건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공동의 식별 과정에서 사목 평의회 의견 표시를, 특히 만장일치로 제시된 경우,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훈령은 사목 평의회가 효과적인 결실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먼저, 본당 주임 신부가 결정된 사안을 사목 평의회에 제시하기만 하거나 꼭 필요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사목 평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목 평의회가 그 안에서 본당 주임 신부를 그저 한 명의 위원일 뿐 공동체의 목자이자 인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²²⁾이다.²³⁾

17)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09항.

18) 바오로 6세, 「거룩한 교회」, 16항.

19) 프란치스코,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31항.

20)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앞의 책, 111항.

21) 참조: 위의 책, 112항.

훈령은 사목 평의회 구성은 가급적 본당 사목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은 이들 또는 구체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사목 평의회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주고받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⁴⁾

결국 사목 평의회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보편교회의 가르침은 사목 평의회가 교구와 본당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는 사목 평의회 의 의무화 가능성까지 제안하고 있다. 사목 평의회는 하느님 백성이 복음화 사명의 주체요 적극적인 주역이며 그 중심임을 실현하는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함께 식별하는 ‘시노달리타스적인 과제’와, 주교와 본당 사목자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의 ‘직무적 책임’이 최고로 잘 표현되는 자리가 바로 사목 평의회라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²⁵⁾

이렇게 본당과 교구 안에서 사목 평의회 설치와 운용이 강력하게 권고되었지만 각 지역 교회에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성직주의로 표현되는 서품 받은 직무자들의 강력한 권한과 이에 대한 신자들의 무조건적 수용이 결과적으로 지역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공의회 문헌에서부터 각종 교회 문헌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의회 운용 방안과 평의회 회원들을 위한 양성, 나아가 지역 교회의 현실에 토착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천주교회와 ‘사목 평의회’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사목 평의회와 관련한 한국 교회의 노력

22)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년, 26항.

23) 참조: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113항.

24) 위의 책, 114항 참조.

2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9항.

2.1.1. 전주교구 사례

한국 교회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구와 본당 차원의 사목 평의회를 설립했던 대표적 교구로 전주교구를 들 수 있다.²⁶⁾ 전주교구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 사항과 그 시행령으로서 바오로 6세 교황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16항에 따라 사목에 관한 사항을 연구, 분석, 계획하여 교구장에게 건의하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선임하여 1968년 2월에 ‘전주교구 사목 협의회’를 조직했다.

교구에서 정한 ‘사도회’의 준칙 제2조에 따르면, 사도회는 “신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책임을 자각하여(교회 헌장 37항 참조) 소속 본당의 전례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도 정신을 함양하여 본당 사도직 사업에 성심으로 종사하며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이에 인도하고 천주의 말씀을 전파시키며, 특히 교리 지도에 열심히 협력하며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교회의 구령 사업과 재산 관리에 더욱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본당의 실정에 맞추어 각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당시 교구장인 한공렬 주교에 따르면 ‘사도회’가 잘 되고 있는 본당의 경우, 사도회 설립 이후 본당의 질서가 잡히고 유능한 인재가 발굴되었으며, 구성원들의 열의가 올라서 본당에 경제적 협력을 하도록 자발심을 일으키는 등 본당 운영이 원활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반면에 잘 안 되고 있는 본당의 경우에는 사도회를 조직만 해 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자들을 본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사도회의 목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공렬 주교에 따르면, 당시 전주교구는 교구 차원의 사목 평의회를 먼저 설립해서 본당의 사목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인식했으나, 오히려 먼저 본당 차원의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 과정을 살펴본 뒤에 교구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고자 했다. 당시 교구 사목 평의회는 그 목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교구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구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 사목 평의회 구성원은 성직자 10명, 평신도 8명으로 구성했다.

26) 당시 전주교구장 한공렬 주교는 전주교구 사목 평의회를 일 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소회를 적은 바 있다. 이하 전주교구 사목평의회 관련해서 기술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한공렬, “전주교구 사목 협의회에 관한 소고”, 『사목』 제7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년, 64-69.

27) 위의 글, 64에서 재인용.

당시 전주교구 사목 평의회는 교구장의 지문 기관이었으나 교구 사정에 따라 집행과 실천에 치중하는 듯한 문제들도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 문제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자체 평가도 있었지만 공의회 직후 초기 사목 평의회 모습의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1.2. 『사목』이 제시하는 사목 평의회 사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주교회의에서 창간해서 당시 한국 교회에 공의회의 결정 사항과 각국의 실천 사항을 소개하던 『사목』지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위의 전주교구 사례와 함께 다른 사례들을 위한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래 ‘사목회의’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²⁸⁾ 이 글은 사목회의의 필요성, 사목회의의 시작 방법, 사목회의 회원, 사목회의 회원 선출 방법, 사목회 내 산하 위원회, 사목회의의 토론 대상, 사목회의에 대한 홍보, 사목회의의 권위 등으로 나누어 숙고하고 있다.

사목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성서적 차원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을 통해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지도 아래 모두 참석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성령이며, 성령은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이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교령 26항을 들고, 마지막으로 본당 공동체는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듯이 상호 소통하는 사목회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목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본당 신부와 3명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일 미사 때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와 추대 등 여러 방법으로 회원을 선출한다. 사목회의 회원 구성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출된 대표들, 본당의 여러 단체 단원과 다른 신자들이다.

사목회의 안에는 다양한 본당 단체와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공동 활동의 조직, 사목 활동의 증진, 소속 위원회 활동의 증진, 각 단체 상호간의 의견 교환 등이다. 사목회의에서는 본당 내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본당 신자들에게 사제의 강론, 회보, 가정 서한 등을 통해 홍보하는데, 여기에는 사목회의 회합, 주제, 토의 결과 등을 포

28) 아래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참고하였다. 사목 편집실, “사목회의”, 『사목』 제7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년, 70-75.

함시켜야 한다.

사목회의의 권위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본당을 운영하기에 종합적이고도 중요한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본당 신자들은 사목회의를 통하여 그들의 결정 사항과 소망을 표현하며 본당 신부는 이에 따라 그의 책임을 잘 수행하고 권위를 행사하며, 최종 책임과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초기 사목 평의회는 모습은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일반적인 사목 평의회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 이룰테면 교구보다 본당을 중심으로 한 사목 평의회가 활성화되었고,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상임 위원회’ 형태의 본당 사목 평의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와 사목 평의회

2.2.1.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의 추진 과정이 갖는 의의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전국적인 시노달리타스 사건으로 평가받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는 오늘날 그 결실로서의 의안집이 남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목회의의 진행 과정이 갖는 의의이다. 200주년 사목회의의 거행 일정²⁹⁾에 따르면, 사목회의는 의제 선정, 전문가들에 의한 의안 초안 작성, 교구와 수도회/교회 단체 차원에서의 의안 심의, 다시 전문가들에 의한 의안 수정 작업, 총회 상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하권 신부가 작성했던 “전국 사목회의 개최안”(1981.1.10.)에 따르면, 사목회의는 본래 교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사목평의회를 각 교구 수준에서 개최한 뒤에 이를 갖고 전국 수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³⁰⁾ 이른바 ‘전국 사목 평의회’를 생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각 교구에서 파견하는 대의원들로 사목회의가 구성된다. 그리하여 크게 세 가지 단계별 추진을 기획했다.

1단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 교구 사목 평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게 하고, 의제 토의 과정을 교구별로 마치고 전국 사목 평의회에 파견할 대의원

29) 참조: 정의채, “특별 기획/전국 사목회의의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 『경향잡지』 1985년 1월 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8-112.; 같은 저자, “200주년 사목회의와 미래의 교회상-사목회의의 의안을 중심으로”, 『사목』 1985년 3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13.

30) 참조: 정의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의 경과(1980.12-1983.6)”, 『신학전망』, 광주가톨릭대학교, 1983년, 61호, 44-47.

을 선출한다.

2단계로는 교구 사목 평의회가 파견한 대의원들과 주교회의에서 임명한 의원들로 전국 사목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전국 사목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 중 교권적 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공의회나 성좌의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³¹⁾

200주년 사목 회의는 선교 200주년을 맞는 한국 천주교회가 사상 최초로 하느님 백성 전체, 곧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다 같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한국 교회의 현실 파악을 위해 별도로 사회 조사를 실시해서 의안 작성에 참고한 것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려 최대한 노력했다.³²⁾

2.2.2.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에 나타난 시노달리타스 요소와 사목 평의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은 내성(Ad intra)과 대화(Ad extra)의 관점에서 구별되어 설정되었다고 총 12개 의안이 마련되었다. 그중에서 성직자, 평신도, 지역 사목, 교회 운영의 안 등에서 사목 평의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내성적 차원에서 선정된 의안들에서 말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 협력과 공동 책임성 등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겠다. 나아가서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단위에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대화하고 식별하는 방법과 개별 교구와 본당 단위의 사목 평의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성직자 의안

주교는 지역 교회 안에서 교회 일치에 표지이며 사제단의 중심이고,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기에 반드시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깊고 넓게 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제 평의회와

31) 이런 사목회의의 계획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추진 실현되었다. 1단계는 ‘사목회의 출발과 의제 선정 과정’(1980년 11월-1981년 11월), 2단계는 ‘의안 준비 과정’(1981년 12월-1983년 3월), 3단계는 ‘교구 사목회의’(1983년 3월-12월), 4단계는 최종적인 ‘전국 사목회의 개최’(1984년 5-12월)로 이루어졌다.

32) 참조: 정의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경과(1980.12-1983.6)”, 『신학전망』, 61호(1983년), 광주가톨릭대학교, 28.

사목 평의회를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13항). 또 본당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를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교회 일에 동참하고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41항).

교구장 주교는 교구 단위의 하느님 백성이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교구민과 긴밀한 연결과 대화 필요하다. 교구의 사목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도 먼저 사목 평의회와 자문을 받아 교구민의 관심사를 사목 계획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42항). 교구 내 중대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나 장기적 정책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교구 시노드를 열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시대적 사명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지향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교구장의 중대한 의무이며 권리라고 천명했다(45항).

아울러 주교회의에서는 매년 공동교서를 통해 사회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목 지침 마련해야 하며, 한국 교회의 중추적이고 지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제 수도자 평신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46항).

나. 평신도 의안

이 의안은 200주년 사목회의 평신도 분과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교구 사목 평의회를 강조했다. 의안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목 평의회가 본당에서는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지만 교구 차원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본당 차원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공동 책임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77항).

평신도의 사목적 직무는 교구 사목 평의회를 통해 교구장을 자문하는 일, 본당 사목 평의회를 통해 주임 신부를 자문하는 일, 그밖의 전국적 지역적 교회 기구나 조직에서 응분의 직무를 맡는 것이다(113항). 그렇지만 평신도의 교회 직무에의 참여는 성직 위계와의 일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사목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제에 대하여 깊은 순명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114항).

다. 지역 사목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주교 교령과 사제 직무 교령을 인용하면서 주교와 사제, 사제

와 신자들 간의 사랑을 강조한 뒤에, 교구의 친교를 드러내기 위해 주교는 가능한 대로 각 본당의 평신도 대표, 수도자, 성직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교구 사목을 논의함이 유익하다고 제안하고(45항), 제안 사항에서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 규약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 교회 운영

교회 운영 의안에서는 교구와 본당, 그리고 주교회의 차원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3장 교구 운영에서는 교구 사목 평의회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의안은 아직도 한국 교회의 일부 교구에서는 사목 평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못하며,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그 실질적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정기적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명문 규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목 평의회 of 실질적 활성화를 통해 한국 교회로서 하느님 백성의 일치된 모습을 드러내고 교구 운영에서 합리성의 제고와 존중성의 따돌림을 촉구하고 있다(35항). 한편, 이 의안에서 제안 사항으로 사목 평의회를 보조성의 원리 안에서 의결 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안은 이런 의결 기구로의 전환이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일원임을 뚜렷이 자각하게 하여 교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제4장 본당 운영에서는 하느님 백성 개념을 본당 운영에 적용할 때 본당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고 그들의 공동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50항). 사목 평의회는 가능하면 전체 본당 신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현실은 본당 주임 사제의 개인적 지명이나 본당 단체 간부,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일정 지위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본당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여성과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이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51항). 사목 평의회 of 기능은 주로 본당 사목의 중대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곧 본당의 각 사도적 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본당의 전체적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 또 사목 평의회는 성격상 주임 사제의 자문 기관이다. 그렇지만 사제의 의사가 논의 없이 그대로 사목 평의회 of 의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초연한 위치에서 경청하면서 최종 결정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곧 주임 신부는 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

회에 대한 그들의 봉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목자인 사제들을 사랑으로 받들며 그들이 직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52항). 한편 이 의안에서는 사목 평의회와 함께 본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들고 있다. 여기서 의안은 전자를 심의 기구로 하고 후자를 집행 기구로 규정했다(53항). 그리하여 두 개의 기구가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4항).

교회 운영 의안에서 인상적인 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중앙 기구로서 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한국 교회의 14개 교구가 전국 차원에서 교구간 협력이 요청되는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주교회의와 그 사무처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고 하였다(20항). 주교회의를 통해 각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교회의 모든 활동이 주교회의의 관심사가 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의 각 위원회는 구성원인 주교가 심의에 책임을 분담하면서 공동 책임을 높이고 나아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국 사업의 기획, 연락과 조정의 기능과 홍보 기능 전담 부서 설립 요청 등 주교회의의 사무처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14개 교구에서 주교와 일정 수의 성직자 평신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매년 한국 교회의 과제와 문제점 알리고 논의하는 전국 대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21항). 이것은 앞서 성직자의 안에서도 제시된 것으로 주교회의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재정찰을 요청하고 있다.

2.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4.16.)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 법전과 한국 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을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된 한국의 지역 교회 법전이다.³³⁾ 곧 이 지침서의 규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원천이 교회 법전과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교회법전과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에서 이야기하는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교구 사목 평의회와 관련해서 교회법 제492-494조와 사

33)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4.16., 14.

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5항을 참조해서 “교구마다 필요하다면 사목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한다”(제147조 1항)라고 하였고, 교회법 제512조 1항과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2항을 참조해서 “사목 평의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 중에서 교구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위촉된 신자들로 구성된다.”(2항)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본당 사목 평의회에 대해서는 주로 교회법 536조와 200주년 사목회의 교회 운영 의안을 참조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73조-176조). 이에 따르면 본당 사목 평의회는 주임 사제의 사목 활동을 보필하는 기관이며(제173조), 주임 사제를 도와 본당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제174조). 사목 평의회는 주임 사제가 임명하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하고 주임 사제는 의장이 된다(제175조). 또 사목 평의회 안에 재무 부서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만일 본당에 재무 평의회가 없을 경우에 이 부서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2.4. 서울대교구·인천 교구 시노드와 사목 평의회

한국 교회는 2000년 대회를 전후로 인천교구를 시작으로 서울대교구, 수원, 청주, 대구, 대전교구 등 많은 교구에서 교구 시노드를 개최했다. 이 교구 시노드는 기본적으로 200주년 사목회의 정신을 이어받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들 교구 시노드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개최되었던 인천교구 시노드와 서울대교구가 사목 평의회와 관련해서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다른 교구들의 시노드에서는 시노드 주제를 특정 사목 영역으로 한정하면서 사목 평의회에 대한 논의가 특별히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2.4.1. 인천교구 시노드

인천교구 시노드 후속 문서(2000.11.19.)³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교구와 본당 차원의 사목 평의회가 교회 운영과 사목에서 평신도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주체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평신도의 참여 의식 부족과 함께 성직자 중심의 경직된 교회 운영을 꼽고 있다. 또 평신도 지도자 양성

34) 최기산, 「제1차 인천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최종 문서」, 2000.11.19.

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현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15-16항).

인천교구는 ‘교회 운영 분야’에서 교구시노드에 의거한 교구 운영, 교구 총회를 통한 3개년 사목 계획 마련 등을 언급한 뒤에 교구 사목 평의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사목 평의회 역할은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구별 평신도 대표와 교구 단위의 단체장을 하는 평신도 비율을 조정한다. 또 각 지구 평신도 대표는 각지구 본당 대표와 주기적 모임을 통해 교구에 보고사항과 건의사항을 준비한다. 교구 계단체 대표들은 단체별 모임을 통한 보고와 건의사항을 준비한다. 사목 평의회는 이들 사항을 심의하고 실천적 결론을 교구장에게 제시한다(제3장 실천 요강개선 제안 참조).

본당 운영은 본당 총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운영한다. 본당 사목 평의회는 본당 사목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 본당 사목 계획의 수립, 사목 계획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예산 편성과 결산 등이다. 사목 평의회는 성격과 위상은 평의회 의장이 주임 신부이므로 의결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한다. 사목 평의회 구성 방법에서 사목회장 선출은 본당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임 신부의 인준으로 임명된다. 사목위원들은 사목회장과 협의하여 선출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모든 사목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목 평의회는 회의 방법은 회의 전에 안건을 미리 배포하고 본당 게시판에 공고한다.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의사 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의결 사항을 찬반율과 함께 기록한다. 회의 종료시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확인하며, 주일 미사시에 의결 사항을 공지한다. 본당 직원의 임면시에 주임 신부는 사목 평의회와 협의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재정 관리에서도 사무장은 사목 평의회에 월말 재무 보고서를 보고하고, 평의회는 검토 후에 전신자에게 공표한다. 또한 1년에 1회 이상 사목 평의회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본당 사목 평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신자 대표 기능의 강화(구역반장, 사도직 단체장 등 참여), 사목회장은 신자들의 직접 선출, 사목 평의회 임원은 전문적 식견과 경력자,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목회장에게 의결권 부여, 운영 지침은 교구 차원에서 마련 등을 제시했다.

2.4.2. 서울대교구 시노드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문서(2003.9.28.)³⁵⁾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권고하는 ‘참여

하는 교회상' '친교의 교회상' 구현을 평신도 역시 공동 책임을 느끼고 사목의 협조자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본당과 교구의 사목 평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6항). 그런 차원에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로 구성되는 교구 사목 평의회는 교구의 사목 활동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의 실천적 결론을 교구장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교구 사목 평의회 위원에 위촉되는 이들은 교구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 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도록 선발해야 한다. 또한, 교구 사목 평의회를 본당의 사목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교구민들의 바람을 사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15항). 또 교구의 사목교서와 사목 계획 마련을 위해서 사목 평의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23항). 아울러 서울교구에서는 교구와 본당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교회 운영 분야, 15-16항). 본당 사목 평의회는 본당 주임 사제가 주재하며, 평의회 회원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당 현안들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사목구 주임이 효율적으로 사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37항).

한국 교회 안에서의 사목 평의회 운용 역시 보편 교회에서의 강력한 권고만큼이나 선언된 문헌 안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 본당 사목 현장에서 사목 평의회는 가장 중요한 사목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구 차원에서 사목 평의회는 대부분 유명 무실하거나 아예 운용되지 않는 교구들도 많았다. 본당 사목 평의회도 본당의 핵심적 사목 기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연 그 실천적 운영에서 시노달리타스적 참여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훨씬 더 많다. 곧 본당 신부의 자문 기구라는 교회법적 명문 조항을 근거로 본당 신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 안에서 본당과 교구의 사목 평의회가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참으로 하나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기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5) 정진석 대주교,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2003.9.28.

3. 시노드 기관으로서 사목 평의회의 장에 요인과 쇄신 방향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는 최초의 시노달리타스 사건으로서 평가될만한 200주년 사목회의를 개최한 지 40주년을 넘기고 있다. 이 사목회의의 결과와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사목회의를 시노달리타스의 한 모범적인 사건으로서 바라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의 한국 교회 단계는 총 4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친 200주년 사목회의에 비해 그 기간은 비록 아주 짧았지만 일반 신자들의 직접 참여 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있다.³⁶⁾ 물론 200주년 사목회의는 한국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한국 교회에 한정된 경우라면,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는 전 세계 지역 교회가 함께 같은 작업 문서를 통해 기도하고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 경우라는 차이도 있다. 한국 교회가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 아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이 과정에서 사목 평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장에 요인과 쇄신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사목적 유연성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지향이 이와 함께 많이 결부되어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3.1. 사목 평의회 활성화의 장에 요인³⁷⁾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는 교구 사목 평의회를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제도적 창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교황청 주교시노드 사무처에서 각국의 종합 의견서를 종합해서 발표한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³⁸⁾는 ‘교회 생활에 여성 신자들의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36) 이번 한국 교회 단계는 역시 전국 16개 교구와 주교회의 차원에서 시노드 과정을 진행했다. 주교회의에서 해마다 펴내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본당의 56.2%인 999개 본당이 참여했고, 신원별로는 평신도의 0.6%(36,374명), 수도자의 19.9%(1,809명), 성직자의 24.2%(1,351명)가 참여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경청하고자 했다. 또 특별히 비신자들도 198명이나 참여했다. 이것은 전체 신자 수 5,938,045명 대비 1.6%, 주일미사 참여자 수 521,859명 대비 17.8%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 종합 자료집」, 4-46.

37) 이하의 내용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8. 권위와 참여’ 참조.

38)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 FOR THE CONTINENTAL STAGE, 바티칸 시국, 2022.1024.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21130?search=%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tc=title&gb=K1200> (검색일: 2023.5.15.)

참여'(61항)와 함께 '사목 평의회의 활성화'(78항)를 한국 교회의 제안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어느 한 기구를 설치하고 상설화하지는 주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⁹⁾ 이 시노드의 비전은 교회 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마치 하느님의 백성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일체의 경청과 협의 없이 결정하는 성직주의적 실천을 변화시킬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론에 따르면 누구도 하느님 백성 밖에 외롭게 위치하고 있는 교회적 직무나 신원은 없다. 이것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에 참여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론을 수용하는 것이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구원 사명을 실천하는 데 하느님 백성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그들은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하여 서로 경청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목 평의회가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꼽고 있다.⁴⁰⁾ 이 요인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며 근본적이다.⁴¹⁾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성직자와 사목위원들의 권위주의 내지는 소통 부재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사목 평의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문화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교회 생활의 중심인 성사 거행과 교리교육 등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교회 삶의 관리와 운영에서 성직자 중심의 독단적 의사결정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목위원들도 본당의 핵심 신자들 중심으로 사제의 개인적 선호나 친소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신자들 안에서 또 다른 위화감과 소통 부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경직된 교회 문화와 권위주의는 복음과 거리가 멀다.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문화의 결여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유기적인 채널의 결여는 처음에는 긴

39) 물론 사목 평의회는 단순히 교회 내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에서 말하듯이 사목 평의회를 하나의 '단체'로만 인식하고 행동할 때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되기 쉽다(111항 참조).

40)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 사목 평의회에 대해 논하고 있는 곳은 '3. 발언', '4. 거행', '8. 권위와 참여', 그리고 '결론' 부분이다. 이 가운데서 '권위와 참여'에서 가장 많이 사목 평의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

41)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는 이런 장애 요인들 때문에 사목 평의회와 같은 제도적 구조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장애 요인들이 사목 평의회 활성화의 가로막고 있다고도 본다.

장과 갈등의 대상이 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무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변화한다.

사목 평의회의 운용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장애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앞의 이유와도 상통하는 것인데 사목 평의회 위원들이 특정한 계층이나 연령대, 성별, 직업, 학력, 지역 등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법전을 비롯한 교회의 관련 문헌들에서 이미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⁴²⁾ 교구 사목 평의회에서만 아니라 본당 사목 평의회에서 더욱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주년 사목회의에서도 사목 평의회는 될 수 있으면 전체 신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하며, 지역의 유력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난한 이들이나 젊은이, 여성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⁴³⁾ 특정 계층의 사람들로 사목 평의회가 구성될 때, 사목 평의회는 본당 전체 하느님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위험에 처하고, 상호 순환적인 시노달리타스의 역동과 친교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목 평의회가 본당의 전체 하느님 백성, 그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단절되면 사목적 고민과 실천은 쉽게 비복음적인 안락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당의 하느님 백성을 최소한의 정도라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목 평의회의 핵심 기능이 ‘자문’이 아니라 ‘집행과 실행’의 측면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며 동시에 사목 평의회가 그 위상과 역할에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당 사제와 평의회에 참석하는 사목위원들 모두 사목 평의회를 집행 실무 기구로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목과 관련한 좀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기보다 효율적인 실천 방안에만 관심하며 애초부터 사목 평의회의 구조를 이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한국 교회처럼 오랜 성직자 중심주의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본당 사제가 사목 평의회를 자신의 개인적 사목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이것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다.

42) “사목 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의 여러 자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한다”(제512조 2항).

43) 참조: ‘교회 운영 의안’, 51항.

3.2. 사목 평의회의 쇄신 방향

사목 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에서는 결국 위의 장애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목 평의회의 구조와 사목 평의회 위원 구성, 사목 평의회의 경청과 식별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3.2.1. 사목 평의회 구조

먼저 본당 사목 평의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구와 본당에서 설치 운용되는 사목 평의회 구조는 집행과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제(諸)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목 평의회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소공동체 사목으로 인해 서울과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 반 소공동체 대표를 사목 평의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하고 기존의 제위원회 대표들은 이들과 주임 신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는 기존의 제위원회 중심보다 본당 사목 평의회가 전체 본당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기존의 사목 평의회 구조가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소공동체 사목이 각 본당에서 쇠퇴하면서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 평의회 구조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연구자가 볼 때 여전히 본당이 지역 사회에서 육화하려면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 평의회 구조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나마 앞에서 장애 요인으로 꼽았던 사목 평의회의 지나친 집행 기관화를 막을 수 있으며, 본당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본당 사목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도 관련된다. 곧 과거처럼 본당 사목구의 성전인 ‘본당’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대상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본당을 ‘작은 지역 소공동체들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⁴⁵⁾

한국의 본당들은 마치 섬처럼 지역사회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 본당 사목은 한층 더

44) 참조: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소공동체소위원회,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원리와 방향, 운영과 실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101-107항.

45) 참조: 『복음의 기쁨』, 28항.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스며들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시 본당의 사목 실천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당 사목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사명 실천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당 사목 평의회 구조가 본당 사목구 내에 있는 신자들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얼마나 경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에 있다고 본다. 사목 평의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 실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당을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본다면 지역 사회의 삶에 깊이 뿌리박힌 소공동체들의 활성화 없이 사목 평의회 활성화 기대하기 어렵다.⁴⁶⁾

3.2.2. 사목 평의회 위원 선출과 구성

사목 평의회 위원 선출이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회법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구와 본당의 하느님 백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 출신 지역, 학력, 직업, 재산 정도 등에서 특정 계층의 신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구성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일부 신자들이 지나치게 오래 사목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정하게 본당에서 세력화하는 문제들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소수의 신자들이 사목위원을 비롯한 봉사직에 장기간 머물면서 신앙생활에서 탈진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본당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양성된 신자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도 시노달리타스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한 양성은 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 본당들에서 이루어지는 신자 재교육을 비롯한 양성 교육은 이런 면에서 재정질이 필요하고 시급히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연구자가 시험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사목 평의회 위원들의 일부를 추천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본다. 지금과 같은 사목위원 선출 방식은 지나치게 본당 사제와 일부 신자들 위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끼리끼리 문화를 걱정하면서도 이를 벗어나

46) 200주년 사목회의의 ‘성직자 의안’에서도 제4장에서 사목 기획과 사목 협의 기구에 대해 말하면서 먼저 본당 안에서 기초 공동체 건설의 중요성을 말한 뒤에 이어서 사목 평의회 설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회 운영 의안’ 역시 본당 사목 평의회 구성과 기능(50-52항), 평신도사도직협의회(53-55항)를 다룬 뒤에 전자가 심의 기구라면 후자는 집행 활동 기구라는 점을 언급한 뒤에 기초 공동체에 대해 길게 다룸으로써(67-72항) 기초 공동체와 사목 평의회 관련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 쉽지 않다. 사목 평의회의 인적 구성을 좀 더 넓히고 그동안 본당 사목과 관련한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 신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 평의회 위원을 추천식으로 선발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고지하고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⁴⁷⁾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도 있지만 실제 사목 평의회 위원 등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양성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3.2.3. 사목 평의회의 경청과 식별 방법

사목 평의회의 경청과 식별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16차 정기총회 「의안집」에서도 강조하는 방법론을 차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여러 차례의 본당과 교구 경청 모임에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했다는 고백이었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비 문서」에서도 이미 제시된 ‘영적 대화’ 또는 ‘성령 안에서 대화’(Conversation in the spirit)⁴⁸⁾에 대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랜 교회적 식별의 전통 안에 있는 이 영적 방법은 시노드 모임을 단순히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역시 이 ‘성령 안에서 대화’를 가장 중요한 식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저 소박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그 첨예한 사안들을 다룰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주교시노드 사무처는 이번 정기총회 개막 이후 각 지역 교회 차원의 시노드 체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다.⁴⁹⁾ 이번 주교시노드가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신학 토론이나 일종의 교회 내 의회가 아닌 것처럼, 결국 사목 평의회의 식별과 진행 방법 역시 충분한 기도와 성찰 아래서 각자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

47) 교회법 제212조 3항의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하며 신자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이 조항 자체만으로는 지극히 능력주의적인 발상처럼 여겨져서 기존의 사목 평의회의 편향된 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48) 「의안집」이 제시하는 ‘성령 안에서 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 준비-(침묵과 기도, 하느님 말씀 경청)-자신의 경험과 기도를 통해 말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기-(침묵과 기도)-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준 울림에 대해 말하기-(침묵과 기도)-함께 건설하기-감사기도 순이다.

49)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32-35항.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경청을 통해 그 뜻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구 사목 평의회⁵⁰⁾의 의결 기관화는 현재 교회의 방침 안에서는 반대되고 있지만⁵¹⁾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 신부가 사목 평의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대표들과 긴밀히 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결정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목 평의회⁵²⁾의 전 과정 안에서 서로 깊이 있게 동반할 때 과정과 결실에 대해 참여자들이 갖는 시노달리타스 의식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목 평의회에 건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공동의 식별 과정에서 사목 평의회⁵³⁾의 의견 표시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⁵⁴⁾ 따라서 사목 평의회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 공지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전체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 식별 방법은 좀 더 결실있는 사목 평의회⁵⁵⁾의 경청과 식별 방법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문(협의) 단계가 숙고의 단계로 이어지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decision making)이 결정하는 과정(decision taking)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가?’⁵⁶⁾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 사목 평의회를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제도적 창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결국 사목 평의회가 어떻게 전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자신의 식별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 시노드’를,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는 ‘본당 총회’를 상설 기구인 ‘사목 평의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교회는 2000년 대회를 전후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교구에서 교구 시노드를 개최해서 전체 교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중장기 교구 사목 방향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교구 시노드를 통해 중장기 사목 비전과 활동 계획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정도씩 개최되는 사목 평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

50) 사목 평의회가 자문 기관인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교회의 기본 입장인데, 최근에는 시노달리타스적인 과제와 직무적 책임으로 이를 구분한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9항 참조).

51) 참조: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113항. 아울러 교회 안에서 ‘자문’의 의미와 가치에는 대해서는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8항 참조.

52)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예비문서」, 30항.

안 등에 대해 식별하고 지문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이것은 최종적으로 교구장 주교의 사목 교서와 사목 계획으로 채택되어 전체 교구민에게 공지되어 실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당 차원에서도 ‘본당 총회’를 개최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시행하고 이는 본당 사목 평의회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식별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서 ‘몇몇 사람’과 ‘한 사람’으로 내려가는 역삼각형으로 이미지화한 바 있는데, 교구 차원에서 사목 평의회는 교구 시노드와 함께 그 중간적 매개적 사례(‘몇몇 사람’)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⁵³⁾ 특별히 사목 평의회는 교구 시노드와 달리 상설기구의 성격을 갖기에 그 실천적 중요성이 크다. 이 역삼각형의 비유는 교회의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데, 본당 사목 평의회에서 교구 사목 평의회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교구 전체 신자들의 상호 경청과 참여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삼각형의 기하학적 구조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아래로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 교구와 본당의 사목 활동은 이 목소리들과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료와 양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⁵⁴⁾ 주교와 본당의 사제들은 본당과 소공동체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성령 안에서 식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며, 친교의 끈으로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3.2.4.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와 주교 단체성을 심화하는 사목 평의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를 위한 「의안집」은 시노달리타스와 주교 단체성이 충만하게 실현되려면 주교회의와 같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다(제2부 3.4 참조). 「의안집」은 이 주제를 성찰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초기인 2013년에 보편 교회의 사목 청사진으로 발표한 『복음의 기쁨』을 인용하고 있다. 교황이 지역 주교들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식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른바 ‘건실한 분권화’(16항)의 증진과 ‘진정한 교리적 권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지닌 주체’(32항)로서 주교회의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프란치

53) 참조: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9항.

54) “그러한 조직들(사목평의회 등)이 ‘기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매일의 문제들로부터 출발할 때에만 시노드적인 교회가 형태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험거운 일일지라도 경청과 나눔의 기회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연설, 2015년)

스코 교황은 2015년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주교회의를 통해 주교 단체성의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회망이 아직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건설한 분권화의 관점에서 이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⁵⁵⁾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200주년 사목회의의 ‘성직자 의안’과 ‘교회 운영 의안’에서 그 중요성과 운용 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안들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결국 주교 단체성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교회의에서 한국 교회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⁶⁾ 이를 위해 ‘교회 운영 의안’은 전국 교구에서 주교와 일정 수의 성직자 평신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매년 한국 교회의 과제와 문제점 알리고 논의하는 전국 대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⁵⁷⁾ 이것은 앞서 200주년 사목회의가 처음에 일종의 ‘전국 사목 평의회’ 성격 아래서 논의되었다는 맥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현재 주교회의를 통한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구현을 위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는 주로 주교회의 산하 주제별 전국위원회나 각급 교구간 국장회의 등을 통해서 올라오는 안전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애초에 주교회의 안에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아주 좁다는 의미이다. 이런 제약된 상태, 곧 시노달리타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주교 임무의 단체적 차원도 그 의미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여건상 어렵다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총회를 앞두고 200주년 사목회의나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와 같은 정도의 ‘전국 사목 평의회’(가칭)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목 평의회는 처음에 교구 단계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당과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

55) ‘건설한 분권화와 주교회의 차원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임재중,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교회의의 역할 연구”, 『신학전망』, 215호(2021년), 광주가톨릭대학교, 172-211.

56)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주교회의의 단체적 임무 수행이 그 안에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계제도가 하느님 백성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57) 참조: 2002주년 사목회의 의안, ‘교회운영 의안’, 21항.

미 이번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한 바 있다.⁵⁸⁾

이것은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역삼각형의 교회 모습을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통로를 마련하되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개최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는 각자의 교구에서 사목 평의회를 비롯한 참여 기구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 온 회원 주교들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도덕적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교구와 주교회의 차원의 경청과 식별 작업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주교회의의 논의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후속 실천 사항 등도 가능한 좀 더 충분히 공유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어떤 중간적 매개도 없이 갑자기 특정한 사목 방향이나 지침들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을 일깨우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통해 발표되는 주교회의의 사목 지침들은 피상성을 벗고 하느님 백성 안에서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것이다. 나아가 주교회의의 이런 노력은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등을 통해 보편교회의 사목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며, 보편 교회의 사목 정책 역시 다시 지역 교회의 삶과 만나서 어떤 복음적 융합에 이르러야 할지 치열하게 숙고하게 할 것이다.⁵⁹⁾

이런 맥락에서 사목 평의회를 둘러싼 교회의 시노드적 소통 구조를 편의상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 소통 구조에서는 소공동체 ↔ 본당 ↔ (지구) ↔ 교구 ↔ 주교회의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 세계주교시노드/사도좌로 이어지는 보편교회적 차원을 말하고, 수평적 차원은 교구와 본당/소공동체라는 지역교회 안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사명 실천을 일컫는다. 수직적 차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주교시노드에서 잘 볼 수 있다. 특별히 세계주교시노드 역사상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를 통

58) “이러한 제도적 장치[사목 평의회]는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걸쳐, 곧 본당의 여러 단계를 비롯하여 각 지구와 교구, 더 나아가 주교회의와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층층히 마련되어야 한다.”(‘권위와 참여’ 중에서)

59)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의 결과가 다시 지역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착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세계주교시노드의 합의 과정은 출발점일 뿐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에서 도착점이 된다(「주교들의 친교」, 7항 참조). 이것은 본당과 교구의 사목 평의회, 주교회의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시 전체 하느님의 백성에게 돌아가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해 처음 시도되는 이 역삼각형 교회론의 시도는, 전 세계 교회가 체험적으로 ‘교회를 느끼는’(sentire cum Ecclesia) 최초의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어느 보편공의회도 이렇게 밀바닥(?)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하느님 백성의 총의를 모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여건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이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에서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중앙 집중적인 영향력의 가속화는 지역 교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나가는 말

지난 3년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팬데믹 위기는 교회의 삶과 직무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 구성원 간 ‘소통 장애’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다. 여러 조사들을 통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자들과 교회 주변에 머무는 신자들 사이에 벽이 더 높아진 느낌이라고 한다. 또 젊은 세대는 기존의 본당 문화가 자신들과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말한다.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물리적 간격을 좁히고, 본당을 비롯한 교회 문화를 일신하는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⁶⁰⁾ 신자들은 교회 안의 끼리끼리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 일부 신자 위주의 본당 운영 등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쇠신해야 할 문화라고 답하였다.⁶¹⁾ 이렇게 지적된 요소들은 다수 신자를 사목의 단순한 대상자 내지 방관자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번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해서 2024년까지 이어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그 예비 문서가 밝힌 바와 같이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첫걸음

60)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61) 참조: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3.2., 136.

이며,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교회가 경험하는 이 시노드 방법론은 향후 교회의 모든 삶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며, 교회의 구성적인 요소인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모든 곳에서 전면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노드적 소통의 상설기구로 한국 교회는 사목 평의회를 적극 권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더욱 실질화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목 평의회는 매우 필요합니다! 주교는 사목 평의회 없이 교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사목 평의회 없이 본당 사목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⁶²⁾

62) 프란치스코, 성직자, 축성 생활자, 본당 사목 평의회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 아시시, 2013.10.4.,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108항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교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2.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1983),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9.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ECCLESIAE SANCTAE, 1966.8.6.). 출처: https://www.vatican.va/content/paul-vi/en/motu_proprio/documents/hf_p-vi_motu-proprio_19660806_ecclesiae-sanctae.html(검색일: 2023.6.23.)

세계주교시노드, “전임 사제직에 관하여-제2차 세계 주교시노드 문헌”, 『사목』 제25호, 1973, 113-130.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_____,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_____, 사목 평의회에 관한 회람 「모든 그리스도인」 (LETTERA CIRCOLARE CIRCA I CONSIGLI PASTORAL OMNES CHRISTIFIDELES) 출처: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clergy/documents/rc_con_ccclergy_doc_19730125_omnes-christifideles_it.html(검색일: 2023.6.23.)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프란치스코,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_____,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Episcopalis Communio), 2018. 9.15., 7항. 출처: <https://cbck.or.kr/Notice/13013832?page=53>(검색일: 2023.5.15.)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 (WORKING DOCUMENT FOR THE CONTINENTAL STAGE, 2022.1024.)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21130?search=%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tc=title&gb=K1200>(검색일: 2023.5.15.)

주교시노드 사무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30370?page=3&gb=K1200>(검색일: 2023.10.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위원회,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전국 사목회의 의안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한국 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2022.

최기산 주교, 「제1차 인천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최종 문서」, 2000.11.19.

정진석 대주교,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2003. 9.28.

논문과 단행본

김진화, “교구 사목 평의회와 법제화 과정”, 『신학전망』, 제136호(2002), 광주가톨릭대학교, 50-66.

사목 편집실, “사목회의”, 『사목』 제7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년, 70-75.

엄재중,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교회의 역할 연구” 『신학전망』 제215호 (2021), 광주가톨릭대학교, 172-211.

정의채, “특별 기획/전국 사목회의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 『경향잡지』 1985년 1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8-112.

_____, “200주년 사목회의와 미래의 교회상-사목회의 의안을 중심으로”, 『사목』 제98호, 1985년 3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13.

_____,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경과(1980.12-1983.6)”, 『신학전망』, 제61호 (1983), 광주가톨릭대학교, 19-104.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단계 종합자료집」, 2022.

_____,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사목 백서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3.2.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 광주가톨릭대학교, 2-47.

한공렬, “전주교구 사목 협의회에 관한 소고”, 『사목』 제7집(196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Renken, John A., *Diocesan/Eparchial Pastoral Councils: Historical Development, Canon Law,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2002.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와 ‘사목 평의회’를 통한 시노달리타스 실현

엄재중·이규성

현재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의 후속 결과에 집중해 있다. 지난 6월 21일 교황청 주교시노드 사무처가 발표한 제1회기를 위한 「의안집」은 2021년 10월부터 전 세계 지역 교회와 대륙별 총회에서 진행된 시노드 과정의 결실이고, 각 개별 교회는 다시 지역 교회의 특수성 안에서 「의안집」이 제시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교시노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상호 소통이야말로 교회의 보편성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 곧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한 일원으로 자신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역시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 아래서 「의안집」의 질문들에 응답함으로서 교회의 보편성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는 교구의 사목 평의회(Consilium pastorale)를 실질화한다는 선언을 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교구들에서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문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개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임 기구”(81항)로 표현한 사목 평의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에서는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와 같은 시노드 기구[참여 조직들]이 효과적인 공동체적 식별 기관으로 변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들이 사명을 효과적이고 창조적이며 활기 있게 지원하려

면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지, 그러한 조직들에 어떻게 공동체 삶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또 기여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안집」이 제시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먼저 사목 평의회 설치를 요청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보편 교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보편교회의 입장과 결부되어 사목 평의회에 대한 규정과 실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의안집」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사목 평의회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와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다루었다.

주제어: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사목 평의회, 시노달리타스, 단체성

The First Session of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and Realizing Synodalitas through the Pastoral Council

Eom, Jae-Jung · Lee, Kyou-Sung

The Catholic Church around the world is currently focusing on the outcome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held in Rome in October with the theme of Synodalitas. Its Instrumentum Laboris, released by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Synod on past June 21, is the result of a synodal process that has taken place since October 2021 in local churches and continental assemblies all around the world, and each particular church is continuing to reflect on the questions posed by the Instrumentum Laboris within the context of its own particularity. This continuous and circular interaction in the synodal process is what makes the universality of the Church (Catholicitas) visible: The faithful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re realizing themselves as part of the People of God.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can participate as well more deeply in the universality of the Church by responding to the questions of the Instrumentum Laboris in its own uniqueness and particularity.

One of the greatest gains of the phase of the local churches during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was the realization of the diocesan pastoral council (*consilium pastorale*) as it is stated in the Synthesis of the Church in Korea. This means that in many dioceses, pastoral council has not been established or has existed only nominall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deeper reflection on and practice of pastoral councils, which Synodality in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the recent document issued by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describes as “the most appropriate permanent structure for implementing synodality in the local Church” (n. 81).

The Instrumentum Laboris asks what obstacles prevent synodal bodies (participatory bodies) such as diocesan and parish pastoral councils, from becoming effective communal discernment bodies; what reforms are needed to make them effective, creative, and vibrant in supporting the mission; how can those living in the peripheries of communal life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these bodies.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s posed by the Instrumentum Laboris, and then summarizes the position of the universal Church stated by the Vatican Council II and since then, which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pastoral councils. This paper subsequently examines how the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pastoral councils have changed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n line with this universal position, returning to the question of the the Instrumentum Laboris and dealing with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pastoral counci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ynodalitas of the People of God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as well as suggestions for their renewal.

Key Words: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Pastoral Council, Synodalitas, Collegialitas

논문 투고일	2023년 11월 3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월 1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